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한병도 · 신영대 · 김윤덕

이해식 · 장철민 · 전진숙

진선미 • 윤준병 • 강유정
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사소송법」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「공직선거법」이 개정(2021. 3. 23.)되어,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'사법경찰관'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(「공직선거법」제218조의30제1항),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절차조항(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)에서는 '사법경찰관'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18조의30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의30제2항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"를 "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"을 각각 "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8조의30(국외선거범에 대한	제218조의30(국외선거범에 대한
여권발급 제한 등) ① (생 략)	여권발급 제한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	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
<u>검사가</u>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	또는 사법경찰관이
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	
그 요청사유, 제한기간 또는 반	
납 후의 보관기간(이하 "보관	
기간"이라 한다) 등을 적은 서	
면으로 하여야 한다.	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	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
<u>검사는</u>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	또는 사법경찰관은
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	
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	
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	
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	
을 요청할 수 있다.	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	4
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	
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	
하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	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
<u>검사는</u>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
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	

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	
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	
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	
할 수 있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